부송국수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 2021155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1.07.1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9.10

[www.부송국수.com]

[부송국수]

정보공개서

[부송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부송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 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 19, 제2동(어양동)

[대표전화번호] 063-836-1400

[팩스번호] 063-836-1402

[가맹사업부] 063-836-1400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IX.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 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 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추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부송국수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 19, 제2동(어양동)							
부송푸드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	대표전화번호 대표픽			
T 5 T =	개인사업자	2015.06.18	이인구	063)836	6-1400	063)836-1402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		8-59-00019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가족이 있으나 기존의 본점(가맹점으로 분류)만 운영하고, 가맹사업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부송국수]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부송국수	
상 호	부송국수 〇〇점	

상표(서비스 표)	부송국수	등록 제4101925110000호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	/	/	488,414	/	/
2022년	/	/	/	429,240	/	/
2021년	65,250	3,775	61,475	370,899	9,931	9,931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별첨 참고.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구고정거래 조정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시크	코 기 (i)	사업경력					
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د اما ت	-11 ==	2015.06~현재	부송푸드 대 표	회사업무 총괄			
관련임원	이인구	대표	2009.06~2010.04	부송국수 대 표	회사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년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 수(명)
八召	상근	비상근	수천 ㅜ(ㅎ)
2023년 12월 31일	1	_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부송국수]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만료 일(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부송국수 (상 표)	영업지역 내 사용	2008.12.20 출원 2009.12.11 등록	출원 조 출원 제4120080032078호 ADE MED 등록 NAGENC 제4101925110000호	이미령 (상동)	2029.12.11. (존속기간만료 일까지)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부송국수] 가맹사업 현황

1. [부송국수]를 시작한 날 : 2009.06.04

※ 당사가 인수한 이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입니다.

2. [부송국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부송국수	부송국수	이인구	2009.06~2010.04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37-1 2층
부송국수	부송국수	이미령	2010.04~2015.05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21(어양동,1층)
부송푸드	부송국수	이인구	2015.06.~현재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19, 제2동(어양동)



3. [부송국수] 업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영업표지	업종					
보 소구수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ተጽጓተ	분식	국수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부송국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3.12.31.		2022.12.31.			2021.12.31.		
\\ \frac{1}{3}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8	18	_	17	17	_	16	16	_
서울	1	1	1	1	1	_	1	1	_
부산	_	_	_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_	-	_	_
인천	ı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	_	_	-	_	_
대전	_	_	-	_	_	_	-	_	_
울산	1	1	_	1	1	_	1	1	_
세종	_	_	_	ı	_	_	ı	_	_
경기	1	1	_	1	1	_	1	1	_
강원	_	_	1	_	_	_	-	_	_
충북	1	1	_	1	1	_	1	1	_
충남	1	1	_	1	1	_	1	1	_
전북	9	9	_	9	9	_	8	8	_
전남	3	3	_	2	2	_	2	2	_
경북	_	_	_	-	_	_	-	-	_
경남	1	1	_	1	1		1	1	_
제주			_			_	_	_	_

5. 바로 전 3년간 [부송국수]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년	17	KORPA FAIR	TRADEMEDIA	TON AGENCY	1	18
2022년	16	1	0	0	1	17
2021년	12	6	2	0	1	16

6. [부송국수]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가맹본부 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 관계인도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의 가맹점사업자가 2023년에 올린 연간평균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2023년말 가맹점수	그 기가지다 가면 서시어 사이 여가 서구 때수에	비고
--	----------------	----------------------------	----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8	183,731	6,287	1,010,925	16,572	49,744	2,049		
서울	1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_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_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_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_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_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_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1	해당없음						5곳	미만
강원	_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1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9	213,463	7,417	1,010,925	16,572	49,744	2,463	9곳	산출
전남	3	해당없음		5/14		5 000		5곳	미만
경북	_	해당없음 ^{OR}	EA FAIR TRA	ADE MEDIATION	ON AGENC	¥		5곳	미만
경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_	해당없음						5곳	미만

- * 상기 금액은 필수 물류 공급액 대비 판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물류 공급액에 6.67을 곱하여 추정한 금액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 본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부송국수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부송국수]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사업연도	가맹점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18개	3,295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수단	ᆌᄁ	AND AND ADDRESS	지출 비용	비고	
丁七	干钽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1177
합계	(비)	W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	-
광고	-	-	_	_	I	
-8 -T	-	-	_	_	ı	
w) -Z	-	-	_	_	_	_
판촉	-	-	_	_	_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예 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송국수]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 소	전화번호
익산우체국	영업과	전북 익산시 중앙동 3가 125번지	063-840-833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계약 체결 후 2일 이내] 예 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 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는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Ⅲ.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 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ビオおるプロエる名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부송국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전기증설비용, 철거비용, 화장실, 정화조, 가스(도시가스)배관 설치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0]				
가맹비	0	계약체결일로부 터 2일 이내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 해 비용 소요	반환 시 당사의 귀 책사유 정도에 따라 서 공제 후 반환
교육비	2,200	계약체결일로부 터 2일 이내	교육 시작 1일 이전 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계약금	0	계약체결일로부 터 2일 이내		가맹점사업자의 귀 책사유로 계약 해 지 시	계약금은 인테리어 대금지급 시 인테리 어 대금에서 4,400천 원을 제외.

* 개점 행사비는 별로도 수령하지 아니함

2) 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3,000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	상품대금 등 각종 대금 미지급.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5,200
가맹비	0
교육비	2,200
계약금	0
(현금)보증금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 (99m 스토) 순,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75,600~ 85,600				
필수설비 (정착물)	냉장고 (육수,반찬,일반) 간택기 가스렌지 의자,탁자 냉,난방 TV 수저등 일체	(협력업 체)	25,000~ 35,000	833~ 1,167	가맹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설치 전 계약 취소	
	비어 및 간판 폰내장공사)	(협력업 체)	44,000	1,467	착수금 40%(계약 체결 후 4일) 중도금 40%(공사 시작 후 7일) 잔금 20%(공사 마감 일)	공사 전 계약 취소	
Š	최초공급	가맹본부	4,400		가맹계약 체결	상품 미 공급	상품 공급 시

상품비용			후 7일 이내	시	반품 및 반환 불가
기타 개점에 필요한 비용	가맹본부	2,200	가맹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개점 전 계약취소(그 간 소요 비용제외)	집기, 소모품비
금융비용					직접 지불하 는 비용 아님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인테리어의 경우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m^2$ 당 220천원(부가세포함)의 비용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2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입지선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의 상권특성 및 주요시설 파악 →당사 및 가맹희망자 동의 시 확정 ※ 상권 및 입지분석은 전적으로 가맹희망자의 책임 하에 선정되며 가맹본 부 가맹본부는 조언 및 입지조건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입지 선정을 요구 할 수 있음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그 국외여해에 걸거사육가 있은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부송국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물품내역 은 당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가맹희망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 자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물품내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은 한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총액의 50% 분담 (가맹점 각각 의 부담은 매출액에 따 라 분담)	분담내역을 가맹 점사업자에게 통		광고가 시행 되었을 시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에 따라 달라짐	분담내역을 가맹 점사업자에게 통 보 후 14일 이내	판촉행사 취소 시	판촉행사 시행 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연 110	가맹점사업자에 게 통보 후 1주 일 이내	교육 취소 시	교육 시행시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비용	(협력업 체)	실제 소요되는 비용	간판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 될수 있으며 교체비 용은 당사자의 귀책 사유등을 고려하여 결정
점포환경개	(협력업	가맹본부				28-29페이지 참조

		분담비용을		
선 비용	체)	제외한		
		나머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 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1회/1월	문의:관리팀 (063-836-1400)
회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7회/1월	문의:관리팀 (063-836-1400)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납부하는 금전은 일체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

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 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 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 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부송국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부송국수] 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2,200천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3,000천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1.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부송국수"의 지식재산인 상호. 상표. 서비스 표. 휘장. 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 2.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송국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송국수"가 부담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는 "부송국수"의 상호나 상표 등 "부송국수"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부송국수"가 이미 제공한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부송국수"에게 반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4. 가맹점사업자는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부송국수"로부터 제공받은 매뉴얼, 문서, 도면, 도서 등 관계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부송국수"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6.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송국수"의 영업표지등을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7.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상품 및 제품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 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부송국수]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 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2023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부송국수]를 시작하거나 경영

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부송국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2) 당사가 [부송국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R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품.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잔치국수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1회 위반: 구두 경고	2023.04 기준
	제품을 판매할 수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 곰탕국수
비빔국수	없음	3회 이상: 계약 해지	삭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다른 가맹점사업자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르 가맥전에 곳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잔치국수	6,000	변동시 개별 통지	2022.12월 기준
비빔국수	7,000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 글인 협중 함키 L	가맹본부	계열회사	
국수 음식점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부송국수	_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 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가맹본부'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부송국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9.96%	0%	0.04%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71.4%	28.6%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의 기간 [부송국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В.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	
	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Е.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제1항의1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제1항의2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45조제1항의3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 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45조제1항의4
○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5조제1항의5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 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5조제1항의6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가맹점사업자가 부송국수의 명칭 외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제3조
2.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 일 이상 방치	제22조2항
하는 경우	
3.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을 위한 위생교육, 영업 허가증 등 제반면	제12조1항.제2
허나 인, 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항
4.가맹점사업자가 교육, 훈련에 불참 하는 경우.	제15조
5.가맹점사업자가 필수상품을 부송국수에서 공급받지 않고 사입하는 경우.	제20조
6가맹점사업자 부송국수의 운영규정이나 품질기준 및 레시피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23조
7.가맹점사업자가 부송국수가 정한 영업시간 1주6일 매월24일 이상 영	제24조
업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 = 12
8.가맹점사업자가 부송국수가 정한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5조

9.가맹점사업자가 광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제27조
10.가맹점사업자가 대금을 말일까지 납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2조
11.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운영	제33조
지침을 위반한 경우.	^ 00a:
12.가맹점사업자가 회계관련 장부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13.가맹점 점검에 따른 본사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36조
14.가맹점사업자가 부송국수나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상품만 판	제29조
매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A 2931
15.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부송국수의 승낙 없이 제3자	제30조
의 명의로 부송국수와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시90조:
16.가맹점사업자가 부송국수가 배포한 가맹점운영관리 규정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허락없이 교육자료등을 인쇄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51조
16.가맹점사업자가 개점승인 규정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거나 본 계약	제13조1항.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제46조제2항
	개시된 경우	의1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46조제2항
		의2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	제46조제2항
	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의3
기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장애를 초래한 경우나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6조제2항 의4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 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 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제2항 의5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조 제 1 항 본분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의 경우종전 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요구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년 이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 14조 1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6조제2항 의6
Ċ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6조제2항 의7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 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 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6조제2항 의8
Ċ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제46조제2항
	경우	의9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등 가맹사업과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49조제3항의1
○ 가맹본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49조제3항의2

재 조 정 절 차	동 의 절 차
게야스저 사우 바새 → 다시 다다티 거ㅌ→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다 토기 · 기메시어가 도이 · 스코 이크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
[변 동시 → /[평사법사 동의 → 구성 완료 	터 효력 발생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수정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가 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는 수정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1개월 전에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자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 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15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CREA FAIR TRADE MEDIATION ACENCY	양도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사유 발생일로부터 3월이내 서 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 토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교육 → 기존 계약 승계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대리운영	대리운영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부송국수]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100 miles 100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 01
반죽한 다음, 반죽을 얇게 밀어 가 늘게 썰거나 틀에 눌러 가늘게 뽑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	가맹사업구
	부 통지 → 완료 2	063-836-1400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부송국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22:00	주 6일. 월 24일 이상	문의: 가맹사업부 063-836-14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 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가맹점사업자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매장 청결(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월	본사 관리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CONTROL AND AGENCY	1회/1월	본사 관리팀
품질 관리(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월	본사 관리팀
복장과 용모(10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복장과용모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월	본사 관리팀
회계 자료(1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자료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월	본사 관리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첨3]과 같은 가맹점 관리 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부송국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부대	담비 율	분담 절차	비고
, –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세시(경제시)	
판촉 행사	전국단위 공동판촉 행사	팜플렛. 카달로그 제작비용 100%	상품의 할인비용 이나 제공하는 경 품 · 기념품 등 의 비용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FA판촉 활동E MEDIATION AGENCY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촉활동을 위한 팸플릿 전단, 카탈로그, 쿠폰 등의제작은 가맹본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가 제작하여야 하며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손해금원과 각 조항별 손해배상액으로 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전 3개월의 매출액을 합산한 금원의 2배를 손해 배상액으로 합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8일 내외	[8~10p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8	
사업 설명・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D-37~3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23~21(3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0	
가맹금 예치	- 우체국에 카맹금 R예치 DE MEDIA	D-19~18(2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17(1일)	
인테리어 공사 (간판설치비)	- 공사 실시	D-16~2(15일)	
비품구입	- 주방용품	D-19~13(7일)	
초도상품	- 초도상품. 기타개점 비용	D-19~13(7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0~4(7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기그저키	비용부담	비고
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지급절차	제외사유	1111
ㅇ점포의 시설,	ㅇ간판교체 비	ㅇ점포의 확장	ㅇ가맹점사업자	ㅇ점포환경개선	
장비, 인테리	9	또는 이전을	의 비용 청구	일로부터 3년	
어 등의 노후	ㅇ인테리어 공	수반하지 않	(공사계약서 등	이내에 가맹	
화가 객관적	사비용(장비 ^E	AF는R TP점포환경	지공사비용을 증	본부의 책임	
으로 인정되	집기의 교체	개선 : 20%	빙할 수 있는	없는 사유로	
는 경우	비용을 제외	ㅇ점포의 확장	서류 첨부) →	계약이 종료	
ㅇ위생이나 안	한 실내건축	또는 이전을	90일 이내에	(계약의 해지·	
전의 결함으	공사에 소요	수반하는 점	가맹본부 부담	영업양도 포	
로 인하여 가	되는 일체의	포환경개선 :	액을 가맹점사	함)되는 경우	
맹사업의 통	비용. 단, 가맹	40%	업자에게 지급	가맹본부 부	
일성을 유지	사업의 통일		(단, 가맹본부와	담액 중 잔여	
하기 어렵거	성과 무관하		가맹점사업자간	기간에 비례	
나 정상적인	게 가맹점사		별도의 합의가	하는 부담액	
영업에 현저	업자가 추가		있는 경우 1년	은 지급하지	
한 지장을 주	공사를 실시		의 범위내에서	아니하거나	
는 경우	함에 따라 소		분할지급 가능)	이미 지급한	
	요되는 비용		ㅇ가맹점사업자	경우에는 환	
	은 제외)		가 가맹본부	수 가능	
			또는 가맹본부		
			가 지정한 자		
			를 통하여 점		

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 첨뷔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3차 : 2차 지급일 KOREA FAIR TRADE MEDIA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1.가맹사업의 통일 성 및 독창성유지에 대한 지도. 2.고객서비스, 영업 방식, 매뉴얼이나 상품의 사용 등에 관한 지도. 3.신규고객 창출 및 영업 활성화 방 법에 대한지도 등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팀 063)836-140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finance:	문의: 가맹사업팀 063)836-140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부송국수]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특별한 경영상 지원 정책이 없습니다.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본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실기교육 상품교육, 서비스 교육	실습교육 집단강의	오픈일 10일 이전	필수 교육
정기교육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집단강의	교육실시 1개월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통지 (3월 또는 10월 중 실시)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부송국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교육	7일(56시간)	2,200	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교육	1일(8시간)	110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 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5조 따라 기한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Ⅳ.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당사는 당사 명의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명의로 운영하는 본점이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끝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팀(063-836-14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bsgugsu.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 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20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2] 20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2] 2021년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3] 2020년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